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공 연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가. 외국공연물의 공연 추천 제한 기준 중 정의가 주관적이고 모호하여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는 기준(제2호 ‘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 사용 및 동작 묘사’)을 삭제하고자 함(안 제6조)
- 나.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 사용 및 동작 묘사가 범죄행위에 준할 경우 공연법 시행령 동조의 다른 호(제1조 ‘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’)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청소년·연소자에게 유해한 공연은 공연법 제5조(연소자유해공연물등)에 근거하여 유해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므로 제한 기준의 중복을 개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기준 중 제2호 ‘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’ 삭제(안 제6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23조제2항제1호 중 “2017년 1월 1일”을 “2023년 1월 1일”로 한다.

제23조제2항제2호 중 “2017년 1월 1일”을 “2023년 1월 1일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)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(생략) 2. <u>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</u>	제6조(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) 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제23조(규제의 재검토) ① (생략)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제4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절차: <u>2017년 1월 1일</u> 2. 제6조에 따른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기준: <u>2017년 1월 1일</u>	제23조(규제의 재검토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<u>2023년 1월 1일</u> 2. ----- ----- <u>2023년 1월 1일</u>
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--------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739